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4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5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Ⅲ. 검토의견

1.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형법에는 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¹⁾이 존재하는바, 개정안은 이처럼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이라는 기산점 표현을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 변경하는 내용임.

1)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8조(결격사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 ----- ----- ----- -----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
나. 다. (생략)	나. 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실행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행 선고 이후 가석방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형기가 만료되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행법 규정이 말하는 형의 집행이 끝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결격사유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가석방 처분의 효과를 개별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가사근로자법」, 「영유아보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여객자동차법」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다수의 개별법에서도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내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가석방 처분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음²⁾.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상 실행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변경하고자 함.

2) 결격사유 적용대상 명시에 관한 유사입법례(예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6. (생략)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 9. (생략)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 4. (생략)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8.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8. (생략)

현행법 상 실행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것은 특별사면³⁾, 형의 시효 완성⁴⁾,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⁵⁾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수정을 통해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형법상 용어가 형의 집행 ‘면제’이고 다수의 개별법에서도 결격사유 규정에서 “집행이 면제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수정은 다른 법률과의 문언을 일치시켜 법 적용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침익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참고로 경찰청은 보완 의견으로,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형 확정일 외에 형 집행종료, 집행 면제 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

3)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 5. (생략)

② (생략)

4)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 7. (생략)

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을 추가로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직업안정법 제41조의2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의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추가 신설 없이도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6) 「직업안정법」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